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대한 일본판례 고찰

일본[판례데이터베이스사건]판결 내용 중심으로

A Study on Japan's Case Related to Database Copyright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al./Ministry of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1.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개개 정보의 저작권 문제

데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보호받도록 새로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이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이란 하나의 집합체(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이 외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 개개(個個)에 대하여 저작

물성이 문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素材)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결정되는 수가 있다.

이들 개개(個個)의 정보가 저작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문기사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대부분 사실보도자료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법령 데이터베이스, 판례데이터베이스 등은

저작권법상 그 개개(個個) 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다.

논문 요지목록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논문내용에 대한 요지작성자의 저작권이 2차적 저작물로서 법적보호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복제 하였을 경우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 법적보호를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 개개(個個)의 정보가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보호받기에 수월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반면에 개

개(個個)의 정보, 수치(數值), 법령·판례등과 같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고전(古典)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된 것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위와 같이 개개(個個)의 정보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법적보호와는 직접관련이 없다. 즉, 개개(個個)의 정보가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판례·법령·수치데이터(증권 등 주식시세)의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이라는 집합체로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정보의 체계적 구성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계적 구성이라 함은 컴퓨터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개의 정보의 양식·배열(Format)을 정하고,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를 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체의 창작적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개개정보의 저작물성과 관계없이 정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창작자가 연구하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창작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호('94.9)에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관한 프랑스

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개개의 소재의 선택에 대한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특성상 적절하지 아니하며, 체계적인 구가성이나 KEY WORD의 부여에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개개의 소재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고, 최근의 일본의 판례에서도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경우 개개정보인 소재의 선택보다도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배열한 것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판례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살펴보자 한다. 특히, 일본에서도 판례데이터베이스, 법령데이터베이스, 그밖에 각종의 수치 또는 통계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저작물성에 논란되던 중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서 의미가 크다.

2. 「무체재산법 판례데이터베이스」사건 (1991. 11. 27. 일본 대판지방법원판결)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령데이터베이스 또는 판례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그 개개의 소재(법령·판례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지만, 체계적 구성에서 창작성을 부여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의 대학(延畿大學)에서 1982년 10월에 상경학부 내에 산업과학연구실을 설치하고 이 대학의 교수(原告)가 동 연구실의 실장으로 취임 하였다. (일본 판례집은 개인정보보호원에서, 원고·피고 등 특정인의 성명을 수록치 않고 있음).

동 연구실에서 원고(연구실장)가 중심이 되어 강사 1명, 학생, 졸업생, 기술계기업인등으로 프로젝트팀을 편성하고, 무체재산법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판례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례리스트, 판례논평등의 입력작업을 원고가 직접지휘 하였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수록대상판례를 선정하고 「판례초록」의 형식을 결정하고 판례「데이터리스트」의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 기억장치에 입력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항목, 형식을 결정하고 양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창작활동을 인정하여 판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원고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판결요지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대학의 연구소내에 연구실장으로 있는 대학교수(원고)가 중심으로 무체재산법「판례데이터베이스」작성작업을 일관하여 행하였으며, 원고가 대상판례를 선택하고, 판결초록의 형식을 결정하였고, 각종의 데이터를 플로피디스크에 입력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항목·형식을 결정하고 포맷(Format)을 작성하였다.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구성하고, 구성원이 원자료(原資料)를 수집하고 서지적사항(書誌的事項)을 정리하였고, 관련법률 키워드 및 사실 키워드를 추출한 키워드 목록, 판례데이터리스트, 판례코멘트를 작성하였다. 위의 프로젝트팀(작업반)의 구성원은 원고(교수)의 지휘·감독아래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저작활동하는 것을 보조하였으며, 연구실 운영을 위한 특별비용은 대학측에서 출연한 사실이 없고, 팜플렛 및 출력된 데이터의

끝 부분에는 저작권자로서 원고 개인의 성명이 표시 되었다. 대학측(피고)에서는 본건 「판례데이터베이스」의 작성·저작을 발의(發意)하고, 원고가 동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상 대학의 사업으로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저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할 수 없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원고의 창작활동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원고(대학교수)가 무체재산권법 데이터베이스(특허법·상표법·의장법·저작권법 등을 무체재산권법이라고도 하 고 지적재산권법이라고도 함)를 작성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모집을 위하여 안내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원고(교수)개인의 저작으로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이용자와의 사용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원고 개인 명의로 작성하고 이용에 따른 수익금도 원고가 관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학측에서는 원고가 동 대학의 교수로서 직무상 창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은 대학측에 있다고 주장하므로써 원고(대학교수)와 피고(대학)사이에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판결에서 중요핵심은 첫째, 종래까지 판례 또는 법령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키워드·리스트 작성 등 서지적작업(書誌的作業)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이 성립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이 판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성립됨을 전제로 제작작업 반(프로젝트팀)을 제작한 원고(교수)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직무상 작성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학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 체계적 구성활동의 내용

이 사건에서 「판례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체계적 구성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1) 대상판례의 수집범위
위 사건의 원고(교수)가 수집한 무체재산권법 관련 개개의 일본 판례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

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에 관한 판례로서 1960년이후 일본 최고 재판소 및 하급재판소(고등법원·지방법원등)에서 판결한 판례를 수집하였다.

(2) 판례 데이터 리스트의 작성 각 판결마다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①판결일자 ②법원명칭 등 서지적사항(書誌的事項)이외에 ③판결문과 관련된 법률 키워드(법령키워드화) ④사실(事實)키워드(기술용어, 물품, 사항의 명칭에 대한 키워드화)(Keyword out of Context-KWOC방식)위의 키워드를 컴퓨터기억장치에 입력하고 서지적사항·법률·사실 키워드에 의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3) 출력포맷

판례데이터베이스 출력포맷은 검색결과에 따라 각 판결마다 판례데이터가 출력되고 그 뒤에 「판결초록」의 번호, 판례비평이 함께 출력된다.

(4) 판결초록의 작성 판결초록에는 다음 내용이 입력 되었다.
①법원명칭 및 사건번호·사건명칭 ②판결의 결론, 당사자 성명, 판결일자 ③관련법조문, 사실의 장점, 당사자 주장 등

(5) 검색방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①전화 또는 우편으로 검색 의뢰 하는 방식 ②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온라인 검색등의 방식이 있다. 위에서 고찰한 체계적 구성요소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있다.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판례정보를 소재로 (1), (2), (3), (4)와 같은 일련의 작업활동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었다.

맺음말

앞에서 여러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경우 개개의 정보(素材)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집합체로서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음을 일본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여부의 판단은 그 구성요소인 정보를 어떻게 창작성 있게 배열하고 키워드를 부여하여 정보의 이용가치를 높이느냐에 두고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증권·유통·통계 등 수치(數值)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도 수치자체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들 수치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도표 등 창작성을 가미하면 충분히 보호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작활동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는데 크게 문제될 바 없다.

업계 일부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법적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투자에 위험부담이 따른다」라고 판단하여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앞에서 소개한 외국 판례의 동향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투자와 상당한 노력, 또한 체계적구성을 위한 창작적 노력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수 없고 결국은 이러한 제작활동 전체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